

금강대학교대학원학칙시행세칙

제 정	:	2009. 5. 1
개 정	:	2012. 1. 1
개 정	:	2012. 11. 1
개 정	:	2013. 1. 1
개 정	:	2014. 2. 1
개 정	:	2014. 5. 1
개 정	:	2015. 1. 19
개 정	:	2017. 4. 1

제1장 입학

제1조(전형시기) 입학전형은 매년 1회 또는 2회 학기별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조(제출서류) 대학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소정 기일 내에 제출하고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입학지원서(소정양식)
2. 졸업(예정)증명서
3. 성적증명서
4. 학업계획서(소정양식)
5. 기타 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3조(전형방법) 서류심사와 전공분야에 대한 지식, 학업계획서에 따른 수학준비도, 외국어 능력 등을 종합 평가하는 구술·면접시험으로 시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일부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제4조(배점 및 합격기준) ①입학전형의 배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류심사 : 60점 만점
2. 구술·면접시험 : 40점 만점

②서류심사와 구술·면접시험은 해당학과(전공) 전임교수 2인 이상으로 평가위원을 구성하고 평가위원 2-5인의 평가 성적을 합산하여 이를 평균으로 산출하며, 산출점수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다만, 구술·면접고사의 경우 평균으로 산출한 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불합격으로 한다.

제5조(합격자 사정) ①대학원장은 학칙 제10조에 의거하여 지원자의 입학전형 성적 등을 대학원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②대학원위원회는 총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재적인원 및 입학시험 성적을 참작하여 합격인원을 조정한다.

③대학원장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 후 총장의 승인을 얻어 최종합격자를 결정한다.

제2장 수업

제6조(교과과정 편성운영) 교과과정 편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과(전공) 단위로 학과(전공)주임교수가 편성하여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결정한다.

제7조(교과목 개설 및 변경) 학과(전공)주임교수는 확정된 교과과정에 의해서 매 학기 개설할 교과목(안)을 작성하고 학기 개시일 1개월 전까지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개설과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학과(전공)주임교수가 개설과목 변경신청서(소정양식)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수강신청) ①학생은 매 학기 소정의 교육과정에 의하여 개설된 과목을 학과(전공)주임교수와 논문지도교수의 지도에 따라 수강 신청하여야 한다.

②학생은 반드시 수강신청결과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정해진 기일 내에 한하여 정정할 수 있다.

③이미 수강 처리된 과목은 임의로 철회할 수 없으며, 수강신청한 모든 과목의 성적(F학점 포함)은 성적기록표에 기록된다.

제9조(수업방법) 수업은 각 과정 및 전공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무단결석) 특별한 사유없이 수업일수의 4분의 1이상 결석한 과목의 성적은 F로 기록되며 과목낙제가 된다.

제11조(필수과목) 필수과목은 빠짐없이 이수하여야 한다. 필수과목을 1과목이라도 취득하지 아니한 자는 졸업할 수 없다.

제12조(선수과목)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선수과목을 이수하도록 할 수 있다.

1. 학부의 전공과 다른 석사과정에 입학한 자
2. 전문(특수)대학원 출신으로 박사과정에 입학한 자
3. 석사과정의 전공과 다른 박사과정에 입학한 자
4. 유사 전공분야학과 입학자로서 해당 학과주임교수의 이수를 요구받은 자

② 선수과목은 취득학점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나 과정의 수료를 위하여 이수하여야 할 과목을 말하며, 이수내역 등 선수과목 이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장이 지침을 따로 정한다.

제3장 학점인정

제13조(타 대학원과 학점교류) ①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가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 학점교류협정이 체결된 국내·외 타 대학원에서 취득한 전공분야의 학점은 학기당 국내 대학원은 3학점, 국외 대학원은 9학점까지 본교 대학원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통산하여 석사과정은 9학점, 박사과정은 12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②학점교류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학위과정 연계) ①석사과정 재학시 취득한 최저수료학점의 초과분에 대하여는 동일계열에 한하여 3학점 범위 내에서 박사과정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자가 대학원이 대학과 공동 개설한 과목을 수강하였을 때는 6

학점 범위 내에서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③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자가 대학원의 박사과정에 개설한 과목을 수강하였을 때는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④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자가 대학원의 석사과정에 개설한 과목을 수강하였을 때는 9학점 범위 내에서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제15조(대학원학점 선취득) 학사과정 학생이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석사과정의 과목을 이수하고 해당 석사과정에 진학할 경우 9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다만, 대학원 학점으로서의 인정은 학사과정 졸업에 필요한 최저학점의 초과분에 한한다.

제16조(학과간 수업 연계) 대학원 내의 타 학과가 개설한 과목의 이수는 전공유사과목에 한하여 학기당 3학점(통산 최대 9학점) 범위 내에서 이를 전공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17조(재입학, 편입학자의 학점인정) ①편입학한 자가 전적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편입학한 학과의 교육과정과 동일 또는 동일계열 과목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인정할 수 있다. 동일 또는 동일계열 과목 여부는 당해학생의 논문지도교수 및 학과주임교수가 심사한 후 대학원장이 결정한다.

1. 석박사과정 2학기 편입 : 9학점까지

2. 석박사과정 3학기 편입 : 15학점까지

②제적 또는 자퇴한 자가 동일과정에 재입학한 경우에는 재적당시 취득학점을 통산하여 인정할 수 있다.

제18조(의무복무 입영에 따른 학점인정) 한 학기 수업일수의 4분의 3을 경과한 자가 의무복무로 인해 군에 입영할 경우, 담당교수가 재량으로 평가하여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제4장 전공결정, 휴학 및 복학

제19조(전공선정과 변경) ①석사과정은 학사과정의 전공과 다르게 희망학과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박사과정은 원칙적으로 석사과정의 전공분야와 동일해야 한다.

②전공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허용할 수 있다.

제20조(휴학과 복학) ①질병 또는 사고로 인하여 학기중 휴학을 원하는 경우에는 종합병원장이 발행한 8주이상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의무복무로 인한 휴학자는 전역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복학하여야 한다.

③학기중 휴학할 경우, 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감면환불하지 아니하며, 차기 복학 학기에 감면한다.

제5장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

제21조(구분 및 신청) ①논문제출 자격시험은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으로 구분한다.

②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기간 내에 소정의 응시원서와 전형료를 내야한다.

제22조(외국어시험) ①시험은 매년 3월과 9월에 실시하고, 2학기 이상 등록한 자는 외국어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② 석·박사과정의 외국어시험은 영어, 불어, 독어, 일본어, 중국어 및 한문 중에서 1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③외국어시험은 독해력을 측정하는 필기고사로 하며, 70점 이상 득점한 경우 합격한 것으로 처리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필기고사를 부과하지 않고, 합격한 것으로 간주한다.

1. 최근 2년 이내의 외국어 능력시험에서 TOEFL(CBT) 213점, TOEFL(iBT) 79점, TOEIC 700점 또는 TEPS 600점 이상을 취득한 경우 또는 FLEX점수를 읽기영역 300점(600점 만점) 이상을 취득한 경우

2. 국내·외 일반대학원에서 외국어시험에 합격하고 동일과정을 수료했거나 취득한 경우.

3. 공용어가 영어인 국가에서 석·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④석·박사과정 외국인한생에게는 한국어능력자격(TOPIK) 5급이상 성적표를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한국어시험을 논술형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박사과정의 경우 외국어시험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외국어는 응시자의 모국어와 동일하지 않아야 한다.

제23조(종합시험) ①종합시험은 석사과정은 3학기 이상 정규등록하고 18학점 이상, 박사과정은 4학기이상 등록하고 24학점이상 취득한 자로서 그 평점평균이 3.0 이상인 자에 한해 지도교수 및 학과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아 응시할 수 있다.

②시험은 3월과 9월에 실시하고, 각 과정별 시행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시험과목에 외국인정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과정	시험과목	과목수	합격기준
석사과정	기초공통 1과목, 전공 2과목 이상	전체 3과목이상 5과목 이하	각 과목 70점 이상
박사과정	기초공통 1과목, 전공 3과목 이상	전체 4과목이상 6과목 이하	각 과목 70점 이상

※ 시험과목 중 과목1, 과목2로 나뉘어져 있는 과목은 1 과목으로 인정한다.

제24조(재시험) ①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응시 회수에 제한없이 시험에 재응시할 수 있다.

②종합시험에 일부 과목만 합격된 자에 대하여는 합격 과목의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제6장 학위논문

제25조(논문지도교수) ①학생(수료생을 포함한다)은 연구 및 논문작성 등에 대해 지도받기 위하여 본인과 동일계열을 전공한 본교 전임교원으로 논문지도교수 1인을 선정하여 2학기 개시 이전에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학생은 논문주제가 복합적일 경우 또는 효과적인 논문지도를 위해 필요한 경우 2명

의 공동지도교수를 선정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논문지도교수에 대한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학문특성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본교 전임교원이 아니거나 박사학위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위촉할 수 있다.

1. 석사과정 : 조교수 이상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원

2. 박사과정 : 부교수 이상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원. 다만, 대상학생이 대학의 교원일 경우 당해 학생과 동급이상이고 부교수이상인 교원으로서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④위촉된 논문지도교수는 논문주제의 변경, 논문지도교수의 장기출장, 퇴직, 사망 등 필요한 경우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논문지도교수를 변경한 경우에는 석사과정은 1학기, 박사 과정은 2학기 이상 새로운 논문지도 교수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⑤학과 내 동일전공교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교원 1인의 신규지도학생이 해당전공 전체 신규논문지도대상학생의 70%를 초과할 수 없다.

⑥논문지도교수는 학생의 학위논문 작성과정에서 표절,대필 등 연구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26조(논문지도비) 지도교수가 위촉된 이후에는 정규 등록기간 중에 논문지도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7조(논문제출자격) 학위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석사과정은 24학점이상, 박사과정은 36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2. 수료에 필요한 최저학점을 총 평점평균 3.0 이상으로 취득하거나 취득예정인 자

3. 선수과목을 평점평균 3.0 이상으로 취득한 자(해당자에 한함)

4. 학위논문연구계획서를 제출한 자

5.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합격한자

6. 학위논문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자

7. 박사과정의 경우, 대학원에서 인정하는 학술지(별표1 참조)에 100%이상의 연구 논문을 발표하였거나 학술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저서 100%를 발표한 실적이 있는 자

〈 연구실적 인정비율 〉

1) 단독연구	100%
2) 공동연구	
가) 논문지도교수와 공동연구	100%
나) 기타 2인 공동연구	70%
다) 3인 이상 공동연구	50%

제28조(연구계획서 제출) 학생은 논문지도교수 위촉 후 3개월 이내에 학위논문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논문지도교수 및 학과주임교수의 승인을 거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 (제출서류 및 시기) 논문은 매학기 지정된 기간내에 논문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승인을 거쳐 대학원에서 정한 제출서류를 논문심사비와 함께 대학원 교학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초록발표) ①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논문의 초록 또는 논문작성계획서를 소정기간 내에 발표하여야 한다.

② 발표는 논문지도교수, 해당학과 교수, 관련 전공분야의 연구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하여야 하며 참가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관련 자료를 제시하거나 질의에 답변하여야 한다.

제31조(논문작성) 논문은 국문 또는 국한문 혼용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외국어 초록(抄錄)과 국문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논문을 외국어로 작성한 경우에도 국문과 외국어 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2조(심사위원) ① 심사위원은 석사논문의 경우 3인으로, 박사논문의 경우 5인(3인은 내부, 2인은 외부교원을 원칙으로 함)으로 구성하되, 대학원장이 전임교원 중에서 논문 제출자의 전공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② 논문지도교수도 당해 논문의 심사위원이 될 수 있으나 심사위원장은 될 수 없다.

③ 위원장은 심사의 진행을 주도하고 의결에 있어 심사위원과 동등한 자격을 갖는다.

④ 위촉된 심사위원은 심사 개시후 교체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심사를 계속할 수 없을 경우 학과주임교수의 제청으로 대학원장이 새로 위촉한다.

⑤ 논문심사위원의 자격 등 세부사항은 필요한 경우 따로 정한다.

제33조(논문심사) 학위청구논문심사를 위한 심사방법 및 심사기준 등 논문심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장이 내규로 따로 정한다.

제34조(논문의 수정) 논문심사 과정 중 심사위원의 수정지시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수정하여야 하며 제출논문은 수정된 것이어야 한다.

제35조(통과논문의 제출) ① 심사를 통과한 논문은 "학위논문작성요령"에 따라 제작하여 대학원 교무팀에 하드표지 1부, 도서관에 하드표지 8부 및 디스켓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학원에 제출하는 논문은 심사위원 전원의 날인이 있어야 한다.

제7장 학위수여

제36조(학위수여) ① 대학원 과정별 수료학점을 평점평균 3.0 이상으로 취득하고 외국어 시험과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학위논문심사에 합격한 자에게는 대학원장의 제청에 의해 총장이 해당 학위를 수여한다.

② 학위수여는 2월과 8월에 한다.

제37조(논문의 공표)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그 수여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박사논문을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공표가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제38조(명예박사학위) ① 본교에서 수여하는 명예박사학위의 종별은 이를 받는 자의 공

헌 또는 공적의 성질에 의하여 구분하되 학칙 제5조의 별표에 따른다.

② 명예박사학위의 수여는 대학원장의 발의에 의하여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지 제3호 서식」의 학위기로서 총장이 행한다.

③ 명예박사학위는 본교의 정규 학위수여일 이외에도 수여할 수 있다.

부 칙

이 세칙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하며,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세칙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제14조 3항, 4항에 대하여는 2012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세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세칙은 201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세칙은 201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세칙은 2015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세칙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별 표 1 〉

구분	내용	비율
1. 국제 저명 전문학술지	A&HCI, SSCI에 등재된 학술지로 전공분야별 인용빈도 순위 상위 50%이내에 해당하는 학술지와 그에 준하는 학술지	300%
2. 국제 전문 학술지	A&HCI, SSCI에 등재된 학술지 중 1항의 기준밖에 해당하는 학술지와 국제적 학술단체에서 발행한 학술지	200%
3. 국내 전문학술지	한국연구재단에 등재(등재후보 포함)된 학술지 또는 연구소 및 학술단체에서 발행하는 학술논문지	100%